吏文과 孫士晟

손오규*

<목 차>

1. 서론
2. 吏文의 개념과 의의
3. 承文院과 吏文교육
4. 孫士晟의 家系와 仕宦
5. 결론

1. 서론

孫士晟(1396~1477)은 조선 세종조에서 세조 초까지 承文院에서 외교문서인 吏文을 전담한 외교관이며 吏文家였다. 이런 그의 일생은 지난 2003년 경상북도 경주시 江東面 良佐洞의 경주(월성) 손씨 대종가에서 발견된 元나라 법전 『至正條格』이 대변한다. 이번에 발견된 『지정조격』은 형사법인 '斷例' 2책과 일반 법률인 '條格' 2책 중에서 '단례'와 '조격' 각각 1책씩이다.[1]

元나라의 法制史를 살펴보면 1206년 大蒙古國이 정식으로 건립되기 전까지 몽고인들은 주로 '約孫'(yusun)이라는 일종의 '관습'을 법으로 삼았다. 元 건립 이후인 至元 28년(1291)에 이르러 漢族 관리들이 제안한 '尊用漢法', '附會漢法'의 건의를 받아들여 唐宋의 법제를 토대로 하고 몽고의 관습을

* 제주대학교 교수

1) 『조선일보』, 2003년 7월 21일, 문화면.

반영한 법전인 『至元新格』을 반포하였다. 그 후 英宗 至治3년(1323)에 『大元通制』를 완성하고 大德 7년(1303)에는 『元典章』을 반포하였다. 그리고 元末 順帝 至正 5년(1345)에 법전인 『至正條格』을 편찬하였다.[2] 따라서 『지정조격』은 원나라에서 몽고족의 관습법을 습합하여 그 후의 중국율령과 법제를 연구 종합하여 완성한 최후의 법전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지정조격』이 조선법제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정조격』은 과거(吏文學)와 승문원 관리 승진 시험의 과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손사성이 『지정조격』을 연구한 것은 이문연구를 위해서이기도 하며, 또한 승문원의 직책이 중국의 예부와 주고받는 외교공문서를 전담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정조격』을 통한 중국법제의 연구는 조선의 외교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중국과의 외교에 철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정조격』은 이문연구가와 승문원 관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필수서적이었던 것이다. 즉 손사성의 이문가로서의 일생을 집약적으로 알 수 있는 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이문연구에서 손사성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그가 남긴 개인적인 서적이나 연구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초기 특히 세종조에서 세조 때까지 우리나라 출신의 吏文家에 대한 연구는 우리 國語史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吏文家 孫士晟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문은 외교문서에 사용된 공문서로서의 문체와 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문에 사용된 문자의 언어학적 연구는 국어사 연구와도 그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둘째, 이 논문은 이문의 개념과 이문이 갖는 역사사회적 의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문은 전통한문이 아니라 구어체 중국어가 혼합되어 있는 복잡한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는

2) 梁伍鎭, 「『吏學指南』의 성격과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 『중국언어연구』 제16집(2003).

이해가 불가능한 문자이다. 결국 몽고어적 전통과 거란어적 전통을 가진 북경어 중심의 외국문자이므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조선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셋째, 이 논문은 承文院을 중심으로 한 吏文교육을 통하여 조선조 외국어교육의 일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增補文獻備考』, 『經國大典』을 기본으로 한 문헌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2. 吏文의 개념과 의의

중국에서 吏는 官에 부속되어 있는 직책이다. 즉 과거를 통하여 정식으로 국가가 임명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에 의하여 채용되고 임명되어 관청에 부속되어 있는 직책이나 사람을 가리킨다. 즉 吏는 官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실용적인 행정사항과 문서를 담당하여 처결하는 역할을 업무로 한다. 따라서 吏文은 吏들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시행하는 공문서와 그 공문서에 사용된 언어를 말한다. 초기의 官과 吏의 이러한 구분은 점차 사전적 의미에 불과하고 오히려 官吏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착화 된다. 즉 관청에서 관리들이 행정을 위해 시행하던 공문서가 吏文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원나라는 중국 관리들의 고전적 교양과 지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대제국을 다스리고 외국과의 외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적 실무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더구나 원이라는 대제국을 몽고족의 관습에 의하여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법전을 만들어 법치를 위한 행정제도의 정비를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법치행정의 뒷받침을 위해 이문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저절로 官과 吏의 구분이 사라지고 실무행정능력이 관리들의 중요한 소양으로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은 事大交隣을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하였다. 사대의 대상은 중국의 명나라였다. 고려 말에도 이미 명나라와 외교문서를 주고받았으며, 조선에

들어와서도 이성계의 왕위 책봉이나 국호의 결정 그리고 태종의 왕위계승과 단종의 양위와 세조의 왕위 계승 등 국가의 중대사로 말미암아 명나라와의 외교는 매우 중대한 국사였다. 그래서 『吏學指南』과 같은 책이 고려 후기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조선 초기 漢吏學의 取才와 科試의 출제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3] 따라서 조선에서 이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과 사정이 달랐다. 중국에서는 관리들이 상용하는 공문서이지만 조선은 외국의 공문을 이해하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문서 작성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이문을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총명한 젊은 인재를 발탁하여 이문연구의 전문가로 양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 이문의 예를 따라 국내공문서도 이문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전자를 漢吏文이라 하고 후자를 韓吏文이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다. 韓吏文을 吏讀와 혼동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문의 두 번째 개념은 중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되던 특수한 문체와 격식의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漢吏文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漢吏文이 가진 언어적 특징이다. 정광은 漢吏文의 언어적 성격을 설명하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북방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원용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 즉 처음 북경을 도읍으로 정한 나라는 금나라였으며, 다음 몽고가 원의 수도로 삼음으로써 언어 중심지가 북경으로 옮겨졌고, 몽고어가 많이 혼입된 형태의 중국어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蒙文直譯体 또는 漢文吏牘体로 불리던 漢兒言語라는 것이다. 이 漢兒言語는 몽고어의 어순에 맞추고 몽고어의 조사와 어미를 삽입한 상태의 언어인데, 吏文에 사용된 언어가 바로 이 漢兒言語이고, 이후 元, 明, 淸 등의 중국왕조는 고려 및 조선과의 외교문서에 '이문'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漢吏文에 사용된 언어는 베이징 방언을 바탕으로 한 매우 복잡한 언어적 특징을 가진 文言文[4]이라는 것이다.

---

3) 梁伍鎭, 「吏文과 吏文諸書輯覽의 言語」, 『중국언어문학』 제14집(2002), 195쪽.
4) 정광, 「吏文과 漢吏文」, 『구결연구』 제16집(2006), 27~36쪽.

또 양오진은 세 가지로 漢吏文의 언어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첫째로 漢吏文은 일반 한문과 달리 시대성을 지닌 공문체의 특수한 양식을 갖추었고, 둘째 이문이 서면어(文言文)임에도 불구하고 근대한어(白話)에서 새롭게 나타난 어휘와 문법형식을 대량으로 섞어서 사용하였으며, 셋째는 몽고어의 영향을 받은 元代한어의 흔적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5] 따라서 이문의 세 번째 개념은, 언어학적으로 순수한문이 아닌 당시의 북경을 중심으로 한 현실음과 개념이 복합된 중국어로서 특수한 문체에 사용된 文言文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을 살펴 볼 때 漢吏文은 오래 동안 연구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해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교문서 작성이란 국가적 대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문의 어려움과 중요성 때문에 조선에서는 사대부 자제들을 과거를 통해 선발하여 그 중에서 젊고 총명한 사람을 뽑아 승문원에서 이문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관리들이 관청에서 시행하는 공문서였으나, 조선에서는 국가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하여야만 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황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헌부의 상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應奉司는 한 나라의 문서를 관장하기에 글을 배우는 선비라면 모두 다 속합니다. 그러나 漢吏之文에 이르러서는 오직 唐誠이 관장하니 만약 어느 날 유고가 있으면 漢吏之文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 소임을 맡아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원컨대 지금부터 文翰의 선비 가운데 총명하고 박학하며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서 미리 吏文을 학습하게 하여 다른 날의 쓰임에 대비하소서.[6]

---

5) 양오진, 앞의 논문, 219쪽.

6)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8권, 4년 8월 20일 己丑(1404, 甲申, 明 永樂 2년)
應奉司 掌一國文書 其學文之士 悉皆屬焉 至於漢吏之文 獨唐誠掌之 若一朝有故 則不學之人 難辨其任 願自今 擇文翰之士聰明博學果藝者 豫習吏文 以備他日之用

應奉司는 承文院의 前身이다. 따라서 응봉사가 관장하는 '한 나라의 문서'(一國文書)는 곧바로 명나라와의 외교문서이다. 그 중에서도 외교공문서인 漢吏之文 곧 漢吏文을 말한다. 唐誠은 귀화 중국인이다. 따라서 사헌부의 지적은 당성이 홀로 漢吏文을 전담하고, 조선 사람 중에는 배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재양성의 문제점을 사헌부가 상소로서 임금께 알리는 것으로 國事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헌부는 인재양성과 등용을 위해 唐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을 아뢴 것이다. 또 사헌부는 한이문의 담당자로 양반 출신의 글을 잘하는 선비, 그 중에서도 특히 총명하고 박학하며 재주 있는 사람을 가려 뽑으라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한이문의 중요성과 함께 한이문의 난해함과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한이문이 실무상의 문서작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만큼 승문원의 한이문 담당자의 역할과 능력은 국가경영상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
> 우리나라의 事大에 譯學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司譯院 생도들은 단지 語訓(말의 뜻)만을 익혀 文理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사신을 접대하거나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갔을 때 번역이 잘못되어 비웃음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衣冠(양반)자제를 가려 뽑아 吏學을 학습하게 명하신 때문에 조금 文義를 통하게 되었습니다.[7]

윗글에서의 文理나 文義는 문장에서의 문맥의미를 의미한다. 語訓은 직접적 표현에 있어서의 사전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직역에 의하

7)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45권, 11년 9월 6일 己酉(1429, 己酉, 明 宣德 4년)
禮曹判書 申商啓 我國事大 莫重譯學 今司譯院生徒 但習語訓 不曉文理 接待上國使臣及我國使臣入朝之日 傳譯舛訛 以致譏笑 故嘗命擇衣官子弟 使習吏學 稍通文義

여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의미는 비유나 혹은 고사성어 또는 말하는 의도의 함축 등으로 말미암아 직역에 의한 번역으로는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 즉 문맥상황으로서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배경지식은 문화적 특색이나 역사 그리고 문학적 기법 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간혹 명나라는 表와 같은 國書에 대해서도 때로는 말의 표현이 불손하다느니 등으로 조선 조정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켜 자국의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 3년(1394년, 명나라 홍무 27년)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어 遼東에 이르러 황금과 비단을 가져가면 禮를 행할 수 있다고 여겨 변방의 장수를 꾀었고 또 사람을 보내 몰래 女眞을 꾀어 압록강을 건너게 했다'는 등의 일로 手詔를 내렸다. 조선은 사신을 보내어 表를 올려서 변명하였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表에 적혀 있는 말(辭)이 거만하다고 요동에 조선 사신을 받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에 태조는 靖安君(뒷날의 태종)을 보내어 表를 바치고 명나라 도읍에 이르러 자세하고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명나라 황제가 다시 朝聘하는 길을 통하게 하라고 명하였다.[8]

이런 일은 아마도 表辭의 표현 문제보다는 조선과 여진을 중심으로 한 변방과의 정치적 관계를 경계하고자 하는 명나라의 의도적 발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명나라는 表辭의 표현을 문제 삼았으며, 조선은 또 친히 왕자가 京師로 찾아가 표를 올리고 자세히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여하튼 조선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외교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의 이문담당자의 선발을 양반자제 중에서도 총명하고 박학하며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가려 뽑았던 것이다.

---

8) 『증보문헌비고』, 제174권, 交聘考4
(太祖)三年 明帝以 本國遣人 至遼東齎金帛 可以行禮 誘邊將 又遣人 潛誘女眞 渡鴨綠江等事 下手詔 切責朝廷 遣使上表辨明… 明帝以 表辭倨傲 益怒 命遼東 毋納朝鮮使… 上教靖安君… 及至京 敷奏祥 明帝優禮遣還 命復通朝聘之路

현재 이문자료로 남아있는 서적은 이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吏文』과 최세진이 중종 34년(1539)에『이문』의 난해한 곳을 해석하여 모은『吏文輯覽』이 있다.『이문』은 총 4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 1권은 宣諭聖旨로 모두 漢語로 되어 있어 이문을 학습하는 데는 무관하여 집람에는 편찬하지 않았다.[9]라는 기록을 보아서, 이문은 2권에서 4권까지인데 모두가 93건[10]이며, 모두 명나라와 주고받은 문서들이다.

제일 처음 것이 歸附各國山川降香致祭事로 명나라 中書省에서 고려 공민왕에게 보내는 咨로 공민왕 19년(1370년, 명나라 홍무 3년)의 것이다. 이 咨에 대한 고려조정의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이문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 명나라 황제가 朝天官 도사 徐師昊를 보내 본국 산천에 제사지내고 또 碑를 경성의 남쪽 風川에 세워 그 일을 기록하였다. 왕(공민왕)이 도사가 壓勝術을 행할까 의심하여 稱病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백관에게 명하여 조서를 맞이하게 하였다. 명나라 황제가 尙寶司 僉斯를 보내어 와서 왕에게 誥命과 金印誥文을 주고 왕을 봉하여 고려왕으로 삼고 모든 儀制器用은 본국 풍속을 따르게 허락하였다.[11]

위의 기록을 볼 때,「歸附各國山川降香致祭事」는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벗어나 명나라와 국교를 맺으려는 시기의 정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문이다. 곧 고려가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자 명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의 공식적 문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 문서를 받은 공민왕은 혹여 명나라의 계책이 있을까 염려하여 조심스런 정치행위를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에

---

9) 崔世珍,『吏文輯覽』, 輯覽凡例
舊抄吏文初卷 宣諭聖旨 皆漢語 於習吏文無關 故不著輯覽 欲習者 宜考諺解漢語諸書

10) 박태권,「이문과 이문집람연구」,『수련어문논집』제1집(부산여자대학교, 1973), 14쪽.

11)『增補文獻備考』, 제173권, 交聘考3
十九年 明帝遣朝天官道士徐師昊 祭本國山川 又立碑于京城南風川 記其事 王疑道士行壓勝之術 稱病不出 命百官迎詔 明帝遣尙寶司僉斯來 錫王命齎金印誥文 封王爲高麗王 凡儀制器用 許從本俗

명나라 황제가 고려왕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고명과 금인고문을 보내고 또한 고려의 고유한 풍습과 전통 그리고 예식과 제도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문의 첫 번째 의의는, 명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성립하였음을 상징하는 공식문서라는 것이다.

또 이문은 양국간 외교적 마찰이 있을 법한 일에 대한 회보가 있다. 이것을 통해 양국은 국가적 이해와 상호의사 소통을 하고 원만한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 예로서 고려 공민왕 19년(1370년, 명나라 홍무 3년) 명나라 중서성에서 고려 국왕에게 보낸 「蘭秀山海賊干連人高麗高伯一審決發回事」라는 咨를 들 수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명나라에서 또 百戶丁志 등을 보내어, 와서 난수산과 반적 진군상 등을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군상 등은 여러 해 바다에서 일을 꾸며 어지럽히다가 명나라가 浙東을 평정하자 거짓으로 명에 항복하여, 다시 그 장수를 죽이고 무리 백여 인을 거느리고 항해해 와서 古阜에 있었다. 明州 사람이 명나라 서울에 고하여 이를 잡아 돌아갔다.[12]

이 일은 명나라의 군사동원에 대한 정황과 결과를 고려에 통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명나라 태조가 진우량과 천하를 다툼에 있어, 미진한 일의 마무리를 위한 군사동원이었음을 공식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의 이해가 꼭 필요한 일이며, 자칫 겨우 정상화한 고려와의 외교관계에 미칠 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명나라의 의도일 것이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아직 진우량과의 다툼에서 그 여진이 남아 있고 더구나 원나라와의 관계는 완전하지 못하여 고려의 외교적 행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12) 위의 책, 제173권, 교빙고 3
明又遣百戶丁志等 來執蘭秀山反賊陳君祥等以歸 君祥積年在海作耗 及浙東平 詐降于明 復殺其將官 率徒百餘人 航海來居于古阜 明州人告于京師 執之以歸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고려가 행한 외교나 또는 명나라에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보낸 문서에 회신을 보내어 온 이문도 있다. 「進賀平蜀又請子弟入學事」는 공민왕 21년(1372년, 명나라 홍무5년)에 명나라 중서성에서 고려 국왕에게 보내어 온 咨이다.

이 해에 고려는 密直司事 洪師範과 司成 鄭夢周 등 150여 인을 보내어 명나라에 입조하여 蜀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고 겸하여 자재의 입학을 청하였다. 이에 명나라에서는 고려국왕에게 위의 이문을 보내었다.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가 명나라에 보낸 「賀平蜀表文」이 文理條暢하고 典故를 원용하여 인용함이 심히 적절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자제의 입학을 청하는 表에 대해 황제가 일찍이 당 태종 때 고려국이 자제들을 경사에 입학시켰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盛事이다. 이 자제들은 멀리서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곳에 반 년 혹은 일 년 혹은 일 년 반을 머문다. 그런데 고려에서 명나라 서울까지는 수로로 바다를 건너고 육로로 일 만 리 정도라 매우 먼 길이기에 부모는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니 이것은 인지상정이라는 말과 함께 회신을 보낸 것이다. 이 咨는 고려가 사신을 통해 보낸 국서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다. 즉 문서로서 명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려에 전달한 것이다. 이런 외교행위는 고려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국가대 국가로서 공식적 문건으로 국가적 입장을 공적으로 주고받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 고려의 都評議使司에서 명나라 中書省으로 보낸 이문으로는 공민왕 23년(1374년, 명나라 홍무 7년)의 「征進馬匹官金義殺害明使走往北元納哈出處事」라는 申을 들 수가 있다. 이 해 명나라 황제가 예부주사(六部에 모두 主事가 있는데 품계는 정六품이다) 林實遇(林密)와 孳牧所大使 蔡斌을 보내어 제주 말 2천 필을 요구하였다. 돌아갈 적에 고려에서 密直副司 金義로 호송하게 하고, 또 張子溫을 보내어 사은하러 함께 가게 했다. 개주참에 이르러 채빈이 술주정하며 김의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김의가 채빈과 아들을 죽이고 임실주(임밀)를 잡아 甲士 3백 인과 進獻馬 3백 필을 가지고 北元

의 納哈出에게로 달아났다.

고려는 공민왕 19년(1370년, 명나라 홍무 3년)에 비로소 명나라 연호를 시행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명나라 사신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북원으로 도망하였으니 고려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공민왕이 시해당하여, 밀직사 장자온과 典工判書 閔伯萱을 명나라에 보내어 諡號와 承襲을 청하고자 했으나 김의의 일로 가지 못했다. 그래서 金湑를 북원에 보내었다. 이 일로 고려조정은 명나라와 원나라를 두고 서로 의견이 나뉘었다. 禑王 원년(1375년, 명나라 홍무 8년) 최원이 명나라에 가서 공민왕의 시해를 알렸다. 이 해 北元의 납합출이 사신을 보내었다. 우왕 3년에는 또 북원의 宣光年號를 사용하였다.[13]

이런 사정을 살펴볼 때, 이 당시 고려는 명나라와 북원과의 사이에서 상당히 국가적 운명을 걸고 고민하고 번민하던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고려는 명나라 중서성에 문서를 보내어 김의가 명나라 사신을 살해하고 북원으로 도망간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문의 두 번째 의의는, 양국 간 외교에서 국제정세에 따른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자국의 안위를 위해 성의와 자세함을 갖춘 이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현존하는『이문』을 살펴보면 卷2에는 咨, 申, 呈, 照會, 奏 類가 32편이며, 卷3에는 咨, 奏, 呈, 題 類가 20편 수록되어 있고, 卷4에는 榜과 告示 類가 41편 수록되어 있다. 모두가 실제 외교에 사용되던 공문서이다. 이중에서 방과 고시는 어떤 행정업무상의 사무나 일을 통보하거나 일반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지 咨, 申, 呈, 奏, 照會의 성격이 궁금하며 또 어떤 글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중국의 사신이 가지고 갔던 國書인 表箋과 비교해 보면 이문의 실용적 공문서로서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13) 위의 책, 제173권, 역대 조빙 3

『경국대전』에 보면 사대문서는 사신이 출발하기 7, 8일 전에 왕에게 奏達하여야 한다. 表箋(표문과 전문)은 예조가 예문관에 移文하여 製述하고 왕의 결재가 내리면 승문원에서 사신 출발 2일전까지 書寫를 마치고 提調가 監進(살펴보고 올린다)한다. 그러면 拜表日(표를 살펴보고 封하는 날)에는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승문원의 제조와 사신가는 使, 副使가 다시 대조하여 검사한다. 또 奏聞에 관한 문서는 도제조와 제조가 사신이 출발하는 날 대조하여 검사한다. 따라서 표전의 제술은 항상 있는 일상적 외교업무가 아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국가적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중국황실에 보내는 문서라는 성격이 짙다.

이문은 주로 중국의 예부나 혹은 遼東都司 등과의 외교업무 상 주고받던 실용공용문이다. 따라서 객관적 격식과 형식에 맞는 표현과 문체가 정형화되어 있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吏文輯覽』권2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咨] 二品이상의 관리가 같은 품계의 관청에 시행하는 글이다. 또 위항의 각 관청에서 각각 당상관의 관청에 주어 시행한다.
[二品以上官 行同品衙門之文 又上項各衙門 各與堂上官行]

[奏] 높고 낮은 신하가 위에 아뢰는 글이다. 즉 주본을 일컫는 것이다.
[大小人臣奏上之文 卽所謂奏本也]

[申] 낮은 관청과 부속해 있는 관리가 상급의 관청에 시행하는 글이다.
[卑衙門及屬司 行上司衙門之文]

[呈] 申과 같은 글이다. 단지 각 관청의 관인이 없다. 수령이나 어떤 직책을 맡은 관리, 마을노인, 군인이나 백성 등, 곧 모두가 행하는 관인 없는 글이다. 속칭 무인정이라고 하니 백두정문을 말한다.

[與申同 但各衙門無印 首領官及各有職役官吏 里老軍民人等 卽皆行無印呈 俗稱無印呈 曰 白頭呈文]

[照會]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게 시행하는 글이다. 오군도독부가 육부에 시행하는 것이나 각 포정사가 안찰사에게 시행하는 類와 같다.

[上司行下司之文 如五軍都督府行六部 各布政司行按察使之類]

[具題] 題는 奏와 같다. 단지 체제와 양식 그리고 字行이 다소 다르다. 具題는 사유를 들어서 題本을 만들어 奏達하는 것을 일컫는다.

[題 與奏同 但體樣及字行 多少不同 此謂具擧事由爲題本而奏達也]

이런 공문서는 일반 經書나 詞章類와는 너무나 성격이 다르다. 철저히 실용문이며 공용문으로 개인의 생각이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된 국가적 문서이다. 따라서 객관적 해석과 분석이 중요하다. 字句 하나에 국가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 이런 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의 관리들은 문장학의 관점에서 철저히 能文能吏의 사무적 소양과 기술적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문의 세 번째 의의는 사대부들의 학문영역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즉 경서나 사장 위주의 공부뿐만 아니라 능문능리의 외교적 소양과 외교문서 작성이라는 문장기술적인 학습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학문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문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중국의 법률과 제도이다. 즉 외교문서를 전달해야만 할 중국의 정확한 관청과 담당자의 직급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 등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나 승문원 관리의 승급에 『지정조격』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관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차츰 우리나라도 공문서 작성에 漢吏文을 모방하여 활용하게 되었으며, 吏讀로 된 문서보다는 吏文으로 된 문서를 좀 더 품격이 높은 것으로 인

식하게 되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다.

> 吏曹에서 아뢰기를 이과와 승음출신은 벼슬을 봉하거나 증직하는 임명장 등의 문첩에 모두 吏文을 사용하는데, 오직 동서반 오품이하의 고신에는 吏讀를 종전대로 사용하니, 아주 상스럽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吏文을 사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14]

윗글에서의 이문은 韓吏文을 의미한다. 따라서 韓吏文은 중국 漢吏文의 영향으로 인한 공문서의 문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韓吏文의 자료로서 책의 형태로 편찬되어 이용된 학습서는 세 부류로 나뉘는데 吏文 套式과 상용 표현을 수록한 用例集(『吏文』, 『吏文大師』 등), 吏文의 상용 표현을 수집하여 字數에 따라 분류한 字類輯覽(『典律通補』, 『吏讀便覽』 등), 각종 書式의 吏文을 수록한 文例集(『吏文襍例』, 『儒胥必知』등)이 전해진다.[15] 이런 서적들의 활용은 공문서에서 이문의 활용도를 높였을 것이며 자연히 공문서 작성과 행정에 있어 규범화된 형식이 전형화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조선 관료사회에서 행정행위의 형식화와 규범화를 촉진시켜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영의 객관적 통치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문의 네 번째 의의는 조선 관료사회의 공문서 작성과 시행이라는 행정행위를 매우 규범적이고 규격적인 형식으로 정형화하였다는 것이다.

세종 12년(1430, 庚戌) 3월 詳定所에서 여러 學의 取才에 있어 經書와 技藝의 數目에 대하여 아뢴 것 가운데, 漢吏學 取才에 『朴通事』와 『老乞大』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책은 중국어 학습교재이다. 그러니 漢吏科 응시생들은 반드시 중국어를 학습하지 않으면 취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漢

14) 『조선왕조실록』, 세조8권, 3년(1457년 丁丑)7월 13일 甲戌(서기 1457년 丁丑, 명 天順 1년) 吏曹啓 吏科及承陰出身封贈誥牒等項文牒 皆用吏文 獨於東西班五品以下告身 襲用吏讀 甚爲鄙俚 請自今用吏文 從之

15) 안병희, 『吏文과 吏文大師』(탑출판사, 1987); 梁伍鎭, 「吏文과 吏文諸書輯覽의 言語」, 『중국언어연구』 제14집(2002), 196쪽에서 재인용.

吏科 출신들은 중국어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런 중국어교육을 승문원에서 담당하였다. 승문원은 漢吏文을 담당하는 외교기관이자 중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승문원 관리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업무의 특성상 이문의 제술을 위해서도 중국어 학습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고려 말에서 조선초기의 북경어는 다소 복잡한 언어였으며 이문에 사용된 서면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중국어 학습의 가장 어려움은 역시 '발음'에 관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譯學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음운학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조선 초기 언어학의 주류는 中國音韻學이었다. 그리고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 語音과 한자음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16] 특히 세종이 중국음운학에 매우 관심이 높아서 언어학에 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어나갔다. 그래서 세종25년(1443) 12월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우리나라 한자음, 즉 한국한자음의 표준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자마자 세종26년(1444) 2월에는 중국 운서인 『古今韻會擧要』(1297)의 收錄字에 새 문자인 한글로 注音事業을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이러한 시도가 『東國正韻』(1447) 편찬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17]

또 세종 때에는 明太祖 欽定인 『洪武正韻』을 가장 중시했다. 특히 이 운서를 中國字音學習用의 표준으로 삼고자 세종 27년(1445) 경부터 『홍무정운』의 형식과 글자풀이는 그대로 두고서 各 小韻의 대표자 앞에 한글로 표음하기 시작하여 단종 3년(1455)에 완료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것이 『洪武正韻譯訓』(1455)인데, 이 운서가 표시하는 성모는 31성모이어서 15세기의 남방음에 가까웠고 22韻類(平上去 各22 入聲10 合76)로 大分한 韻母는 비교적 15세기의 북방음에 가까웠다. 또 세종은 이 책의 이용편의를 위해 신숙주에게 쉽게 개편하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신숙주는 『홍무정운』과 거의 같은 시

16) 강신항, 『한국의 운서』, 태학사(2000), 17쪽.
17) 강신항, 위의 책, 51쪽.

기에 『四聲通考』를 만들었다. 그 뒤 중종 때 최세진은 『사성통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四聲通解』를 만들었다. 이 책은 『사성통고』의 형식은 그대로 취하되 平上去入마다 일일이 자음을 한글로 표음한 방점까지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평성과 입성 小韻代表字 앞에만 한글로 표음하고 자세한 字釋을 달았다.[18]

이런 사실은 우리말과 중국말과의 음운적 차이와 그 특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정확히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신숙주의 『홍무정운역훈』과 『사성통고』가 거의 동시에 출간되었다는 것은 신숙주의 중국어와 우리말에 대한 언어학적 차이와 음운학에 대한 학문적 깊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언어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신숙주는 중국어로 李邊과 함께 『訓世平話』라는 책을 만들었다.[19] 성삼문도 『直解童子習』과 『훈세평화』는 중국어(華語)를 학습하는 門戶라고 하였다.[20] 신숙주의 언어학적 지식은 단기간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학습하고 연구한 학문적 결실이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언어학의 주류가 중국음운학이었다는 사실은 중국어나 한국어를 초월한 일반언어학연구의 학문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즉 중국음운학에 대한 연구는 결국 중국어의 발음에 관한 것이며, 이 발음을 기초로 한 음운에 관한 연구는 음성언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학문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음운연구는 우리말의 음성언어로서의 특징을 학술적으로 인지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음성언어로서의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운서들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음운연구의 결과물일 뿐이며 이미 훈민정음 창제 이전부터 음운연구의 학문

---

18) 강신항, 앞의 책, 135쪽.

19) 『조선왕조실록』, 성종122권, 11년 10월 19일 乙丑(서기 1480년 庚子, 명 成化16년)
曩者領中樞李邊 與高靈府院君申叔舟 以華語作爲一書 名曰 訓世平話

20) 成三問, 『成謹甫集』, 卷一, 直解童子習序(『한국문집총간』 10)
又以直解童子習 訓世平話 乃學華語之門戶

적 축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즉 훈민정음 창제의 언어학적 기반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문의 다섯 번째 의의는 조선 초기 譯學의 발전과 음운연구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문적 성과는 음성언어로서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통한 훈민정음 창제의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게 하였다고도 할 것이다.

3. 승문원과 이문교육

이 장에서는 승문원의 명칭과 연혁, 조직 및 직책에 대한 선발, 그리고 관리들의 이문교육과 평가에 대하여 『經國大典』과 『增補文獻備考』 및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승문원의 명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文書監進色을 두어 事大交隣文書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후에 文書應奉司로 이름을 고치고, 使와 副使 그리고 判官을 두었는데 모두 겸임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太宗 11년(1411) 6월에 文書應奉司를 承文院으로 개칭하였다. 원래 승문원은 북쪽 陽德坊에 있었으나 조선 세종 15년(1433) 대궐 북쪽에 별다로이 건물을 세워서 옮겼다. 이것은 아마도 승문원이 관장하던 이문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대궐 밖에 있던 승문원을 대궐 안으로 옮겼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조선 영조 46년(1770) 慶熙宮과 昌慶宮에 각각 하나의 건물을 세우고 승문원 안에 國朝以來의 詔勅과 御書를 받들어 모셨다(奉安). 경희궁의 건물은 敬奉閣이라 하고 창덕궁의 건물은 欽奉閣이라고 하였다. 승문원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따라 그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못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승문원은 고려 공민왕 때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조선의 건국과 국호제정 그리고 왕과 왕비 및 세자의 책봉 그리고 元, 明과의 국제관계로 말미암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승문원이 맡은 직책은 吏文製述과 習讀, 그리고 漢訓(漢字之訓) 및 寫字를 담당하였다. 이 중에서 이문은 앞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咨, 照會, 題 등의 외교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이문을 학습하여 익히는 것을 말하며, 漢訓은 漢語와 연계되어 연구되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이 중에서 寫字는 表箋의 國書를 포함한 여러 문서를 베껴 쓰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맡은 승문원 관리를 寫字官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 초에는 寫字官이 없었다. 그래서 文臣 가운데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寫字官으로 삼았다. 또 승문원에서 寫字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뒤 문신 중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宣祖 때부터는 선비계층이든 서인이든지를 막론하고 글씨 잘 쓰는 사람에게 軍職과 冠帶를 주어 항시 근무하게 하였다. 李海龍과 韓濩(한석봉)가 그 시초이다. 이런 현상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차츰 도학 위주의 성리학이 매우 성하게 되어 사대부들이 모두 學理探究 위주의 학문에 경도되고 실제적인 사무에 사용되는 기능에 관한 지식과 재능을 경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는 승문원이 맡고 있던 이문, 한훈, 사자의 직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대부의 기능이며 업무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태종 11년에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였으며, 세종 때는 대궐 밖에 있던 승문원을 새로 전각을 마련하여 대궐 안으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동시에 승문원을 正三品 衙門에 속하게 하였으며, 관원은 모두 文官으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승문원은 매우 중요한 관청이었으므로, 李睟光은 나라에서 事大를 중히 여긴 까닭에 文官 중에서 堂下官을 肄習官이라 칭하고서는 모두 승문원에 속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21] 또 崔岦의 承文院契會圖識에서 말하길, 우리나라는 사대를 중히 여기고 교린을 돈독히 하여 그 문서의 시행과 典故의 상고를 모두 승문원이 실제로 주관하였다. 그래서 반드시 儒臣 중에서 젊고 자질이 민첩한 사람을 가려 뽑아 모

21) 『증보문헌비고』, 卷221, 職官考八
李睟光… 又曰 國朝以事大爲重 故堂下官 稱肄習官 悉屬槐院

으니, 늘 또한 기용되기가 오랜 소망이었다. 그래서 대개 人才府庫라 불리게 되었다[22]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초기의 승문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직책의 중대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관리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을 가려 뽑아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니, 많은 젊은 관리들에게는 승문원에 뽑히어 근무하는 것이 오랜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경국대전』에 실려 있는 승문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正三品－判校 一員
- 從三品－參校 一員(敎, 訓이 兼任)
- 從四品－敎勘 一員(敎, 訓이 兼任)
- 從五品－校理 二員
- 正六品－校檢 二員
- 正七品－博士 二員
- 正八品－著作 二員
- 正九品－正字 二員
- 從九品－副正字 二 員
- 吏文習讀官－二十 員

그리고 都提調의 정원은 三員이고 議政이 겸임한다. 提調와 副提調는 정원이 없다. 그래서 正一品인 관원을 도제조라 일컫고, 二品 이상인 관원을 제조라고 하며, 通政大夫(正三品)인 관원은 부제조라고 일컫는다. 또 參校 이하는 다른 관청의 관원들이 겸임하며 정원은 없다.

判校는 堂上官에 승진 임명되고, 또 校檢 이상의 관원 중에서는 一員을

22) 위의 책, 卷221, 職官考八
崔岦承文院契會圖識曰 我國重事大敦交隣 而凡文書之行 典故之稽 院實主之 故必萃儒臣之新進賚敏者 而長亦必用宿望焉 盖院號爲人才府庫

久任으로 한다. 즉 정해진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검교 이상의 관원 중 한 사람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職에 그대로 재임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博士 이하의 관원은 奉常寺(祭祀와 諡號의 議政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의 直長 이하의 관원 한 사람이 겸임을 하였고, 교검 이상의 관원 중에 결원이 있으면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직기한을 계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전임하게 하였다.

그리고 太宗 5년(1405) 3월 예조에서 六曹의 직무분담과 소속을 詳定하여 啓聞하였는데 승정원(당시 문서응봉사)은 예문관, 춘추관, 성균관, 봉상시, 사역원 등과 함께 禮曹에 속하게 하였다. 太宗 8년(1408) 12월 직제를 고쳤다. 이전에는 吏學을 할 만한 사람 30명을 口傳으로 뽑았으나 職任의 遷轉이나 政曹(吏曹와 兵曹)의 중요한 직무에 있고 혹은 決事나 出納에 있고 혹은 外任으로 제수되었으며, 또 前銜(관리가 이전에 받은 직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고를 칭탁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아서 吏學이 약해지고 소원하게 되었기에 승문원의 직제를 고쳐 吏文習得과 製述을 담당케 하였다.

- 正三品－知事 一員
- 從三品－僉知事 一員
- 四品－檢討官 二員
- 五品－校理官 二員
- 六品－修撰官 二員
- 參外書記 四員
- 權知(임시직원이나 수습직원)

이 중에서 權知는 이전에 있었던 口傳을 시행한 前銜으로 이학에 재능을 가진 인원과 書寫의 소임을 행할 수 있는 인원을, 본래 관청의 품계에 따라 權知로 삼아 口傳仕官하여 업무를 익히게 하고, 인재로 양성 된 뒤에 申聞하여 가려 뽑아 임용하게 하였다. 또 이문에 능통(習熟)한 사람과 업무가 간

단한 각 관청의 祿官을 겸임으로 임명하여 본래 관청의 임무(仕進)와 숙직(上直) 그리고 지방출장(出使) 및 外任을 면제하고 이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또 太宗 11년(1411) 6월[23] 文書應奉司를 承文院으로 개칭하고 다시 직제를 고쳐 祿官(봉록을 받는 전임관원)을 두었다.

- 正三品－判事 一員
- 從三品－知事 一員
- 從四品－僉知官 二員
- 從五品－校理 二員
- 正六品－副校理 二員
- 從七品－正字 二員
- 正八品－副正字 二員

이전에 응봉사는 오로지 사대문서만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래서 현재 임용된 관리(時任)이거나 벼슬을 그만둔 사람(散官)이거나를 막론하고, 직임에 알맞은 사람을 임명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근무한 연수가 오래되면 銓選(재능을 시험하여 인재를 전형하여 선발함) 후보로 삼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祿官으로 삼았다.

다시 太宗 17년(1417, 丁酉)[24] 6월 祿官 증원으로 博士, 著作을 각기 二員 증원하였다. 새로운 직제는 다음과 같다.

- 正三品－判事 一員
- 從三品－知事 一員

23) 『증보문헌비고』, 卷221, 職官考 八에는 태종 9년(1409)에 직제를 고쳐 知事 등등을 두었다고 하였으며, 또 태종 10년(1410)에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랐다.

24) 『증보문헌비고』에는 태종 15년(1415)이라고 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존중하여 그대로 따랐다.

- 從四品－僉知官 二員
- 從五品－校理 二員
- 正六品－副校理 二員
- 正七品－博士(이전의 從七品 正字를 正七品 博士로 함)
- 正八品－著作郎(이전의 正八品 副正字를 正八品 著作郎으로 함)
- 正九品－正字 二員(신설함)
- 從九品－副正字 二員(신설함)

그리고 世宗 2년(1420) 3월 첨지 1명을 줄였다. 따라서 종사품 첨지는 1명이 되었다. 또 世宗 15년(1433)에 僉知를 고쳐서 副知事로 삼았다. 世祖 11년(1466)에 또 직제를 고쳐서 判校, 參校, 校勘 각 一員, 校理, 校勘, 博士, 著作, 正字, 副正字, 각 二員, 그리고 吏文習讀官 二十員을 두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博士 이하를 혁파하였다. 中宗 초에 다시 博士 이하를 두면서 參校, 校勘, 校理를 幷減하고 校檢을 一員 減하였다. 후에 고쳐서 判事를 都提調로 하고 三員을 議政이 전례대로 겸임 하였으며, 知事를 提調로 삼았는데 정해진 인원이 없었다. 副知事를 副提調로 삼았으며 一員 혹 二員이다. 아울러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權知副正字를 겸하게 했으며 정원이 없었다. 중종 19년(1524)에 吏文學官을 증설하고 또 후에 漢吏學官으로 實學官 7명과 豫差學官 3명을 두었다. 선조 때 學官 4명을 줄이고 제술관 3명을 더 두었으나 숙종21년(1695)에 학관 3명과 제술관 1명을 줄였다.

다음으로 승문원의 관리 선발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증보문헌비고』권 186, 選擧考3, 태조 원년에 權近이 올린 글을 보면, 漢吏之文은 事大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도, 그 科目이 없으므로 고려 明經科의 예를 따라 文科를 시험 보는 날 아울러 吏文之士를 시험하여 正科와 같게 하라고 주청하였다. 國初에 그만큼 吏文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朝鮮 初 漢吏科의 初試는 二場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니, 初場에서는 賦詩를 終場에서는 吏文을 시험하였다. 그 다음 會試는 三場으로 나뉘어져 있

었으니 初場에서는 吏文, 四書, 三經, 漢語를 시험보고, 中場에서는 表箋記頌을 그리고 終場에서는 排律을 시험하였다.

이런 기록을 볼 때, 漢吏科 응시자는 明經科의 예를 따라 四書三經을 공부하여야만 했으며, 그 이외에 吏文을 더 보태어 공부해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漢語(중국어)까지 공부해야만 했으므로, 漢吏科의 전문성과 그 과정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漢吏科는 단순히 吏文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經書類와 賦詩 그리고 排律 등을 시험함으로써 당시 관리로서 또는 유학자로서의 교양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吏文과 漢語라는 직책상의 전문성을 시험하였으니, 吏文科 출신의 문화적 배경과 전문성은 매우 특별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漢吏科 출신을 正科출신과 동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우대하고 중시하였다.

그런데 조선 세종 5년(1423) 12월 吏曹의 주청으로 漢吏科는 혁파된다. 왜냐하면 종전에 문과이외에 별도로 이문과를 설치한 것은 專掌하는 관아가 없었기 때문인데, 승문원의 特設로 式年마다 문과 급제자 중에서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승문원에 임명하여 이문을 강습하고 또 임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태종 17년(1417) 3월 예조에서 승문원 牒呈의 이문에 관한 事宜를 올렸는데, 이 해부터 문과의 新及第者 중에서 나이가 적고 글씨를 잘 쓰며 聰敏한 사람 10명을 가려 뽑아서 權知 副正字로 임용하여 이문을 학습하게 한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吏文科를 혁파하고 문과 응시자에게 겸하여 이문을 시험하고, 式年에 나누어 임명할 때 이문을 시험하여 합격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였다. 또 조선 중종 37년(1542) 金安國의 건의로 일시 다시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漢吏科는 『國朝榜目』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이것은 시행되다가 중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吏文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吏文學의 取才 시험영역이 확대되고 강조되었다. 조선 세종 12년(1430) 3월 18일 詳定所에서 여러 學의 取才에 經書와 여러 技藝의 數目을 아뢰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儒學, 武學, 漢吏學, 字學, 그리고 譯學 등의 교재를 열거하고 있는데, 漢吏學은 『書』, 『詩』, 『四書』, 『魯齋大學』, 『直解小學』, 『成齋孝經』, 『少微通鑑』, 『前後漢書』, 『吏學指南』, 『忠義直言』, 『童子習』, 『大元通判』, 『至正條格』, 『御製大誥』, 『朴通事』, 『老乞大』, 『事大文書』, 『謄錄』, 『製述』, 『奏本』, 『啓本』이라 하였다. 이에 비해 유학은 『五經』, 『四書』, 『通鑑』, 『宋鑑』이라 하였다. 즉 경서와 역사에 관한 것이다. 유학에 비해 漢吏學은 너무나 광범위하다. 즉 한이학은 역사와 경서 그리고 한이문에 관한 지식이외에도 『大元通制』, 『지정조격』과 같은 원나라 법제에 관한 분야와 『박통사』, 『노걸대』라는 중국어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승문원의 역할이 사대문서의 작성과 漢訓 그리고 寫字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법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의 역할까지도 담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승문원의 특성상 이문교육과 평가의 척도는 매우 엄격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상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즉 승문원은 관리들의 이문제술과 습득 그리고 한훈 및 서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여 관리들의 전문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보다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이문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이문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세조 6년(1460) 5월 이조에서 아뢴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승문원 博士(正七品)이하는 나이가 젊고 총민한 사람을 택해서 임명하여, 5년 내지 6년이 지나야 벼슬을 옮길 수 있게 함으로써 이문과 漢學을 정밀하게 익히도록 하였다. 이후로 九品에서 八品으로 승진 할 때는 『노걸대』, 『박통사』를, 八品에서 승진하여 다른 자리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직해소학』과 『지정조격』 등의 책을 습독하게 하여 장부에 올리고, 매 四仲月(매철의 중간달) 도제조와 제조가 장부를 살펴 시험하여 略(通, 略, 粗通, 不通의 등급) 이상인 사람을 전직시키게 했다. 또 通·略은 승진시키고, 만약 한 곳이라도 粗通인 사람은 殿最(지방감사가 각 고을 수령의 치적을 심사하여 중앙에 보

고할 때, 그 우열을 나누어 상등을 最라 하고 하등을 殿이라 하던 제도) 中等의 예에 의해 전직시키지 말게 했다. 또 不通인 사람은 파직하도록 하였다. 이런 평가에 따른 人事는, 일단 승문원에 임용된 관리일지라도 그 학습에 따른 평가를 통해 승진과 파직이라는 상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제도는 성종조(1493) 9월 1일 成俔의 書啓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승문원 이문교육의 일환으로 인재양성의 교육과 평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종 7년(1425) 12월 26일에는 임금이 傳旨를 내려서, 승문원 관리와 吏文學官들은 매월 1일과 16일에만 관아에 나오고 그 외의 날에는 吏文習得에 전념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문교육의 철저를 기하려 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학습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승문원 관리와 이문학관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승문원의 관리들은 행정사무보다는 오히려 연구의 영역을 중시하였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철저하였다. 세종 13년(1431) 1월 예조가 승문원의 첩정에 의하여 아뢴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즉 승문원의 직임을 띠고 있는 관원은 다른 사무를 폐지하고 오직 승문원의 임무만을 맡게 하였다. 또 吏文習讀官으로서 다른 관직을 겸임한 사람도 승문원에 나와 이문을 익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문등록』, 『지정조격』, 『대원통제』는 우리나라 말로 새겨서(鄕訓) 習讀하게 하고, 학생들이 齋內에서는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오직 漢語(중국어)를 전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언어가 능숙하고 音義까지 통하면 이를 위에 알려서 직위를 더하게 하였다. 이것을 볼 때 세종조 승문원의 이문교육은 漢語교육도 동반되어 있었으며, 그 실효를 위해 상벌을 철저히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벌은 승문원 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실제로 체감하게 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이문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승문원에서는 吏文製述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즉 세종 15년(1433) 6월 승문원의 祿官과 權知는 열흘마다 한 번씩 이문을 짓게 하고 高下를 매

겨서 매달 啓達하고 연말에 통계를 내어, 吏曹에 傳報하여 벼슬의 陞黜에 참고하며, 또 읽은 글을 시험하여 通·不通과 誦·不誦을 기록하고 매달 啓達하여 褒貶할 때 참고하게 하였다. 또 세종 21년(1439) 4월에는 이문에 대한 평가가 매달 末에 通·不通만 아뢰기 때문에 이문학습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므로, 이 날 이후부터는 매월 무슨 책 몇째 권 몇 째 장까지 읽었는가를 기록해서 아뢰고, 연말에 가서 1년 동안 읽은 것을 통계 내어 벼슬을 陞黜하게 하였다. 또 관리에게 이문을 배우는 생도를 각각 나누어서 맡아 가르치게 하고, 그 생도의 학습정도가 얼마나 많은지 또 通·不通의 정도를 헤아려서 褒貶의 참고로 삼게 하였다.

이런 평가 제도는 승문원관리 본인의 人事考課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스스로 학습에 정진하게 하였다. 또 그 평가하는 항목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이었고 이문생도들의 개인별 책임제를 통하여 상호학습을 통한 인재육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종 26년(1444) 1월 훈도관과 學官들이 매일 승문원의 祿官과 함께, 학습해야만 할 글을 漢音으로 강독하게 하였다. 또한 승문원관리로서 하루를 독서하지 않으면 그 하인을 가두고, 2일이 되면 啓達하여 논죄하도록 법을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일 독서하는 범위를 기록하였다가 考講을 받을 때마다 仕日의 많고 적음으로 헤아려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仕日이 많더라도 독서한 것이 적으면 죄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관리들의 이문학습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학습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문습독을 부지런히 하지 않아 파직된 승문원 관리는 그대로 승문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이후 그 임무수행이 근면해지면 다시 임용하게 하여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런 조치는 이문습독의 철저를 기하게 하였다. 또 이 해 8월에는 승문원 제조들이 매달 세 번씩 승문원에 坐起해서 吏文의 高下와 관리의 근태를 살펴 매월 그믐에 啓聞하게 하였다. 승문원 도제조는 正一品을 칭하는 명칭이며, 제조는 二品이상을 칭하는 명칭이다.

그런데 승문원은 正三品 衙門이므로 이는 승문원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보다 높은 품계의 겸임자가 열흘에 한 번씩 직접 이문학습과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종의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이며 감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문원의 이문학습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상벌의 시행을 통해 세종은 이문교육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이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동시에 인재육성이 국가적 과제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역대 왕들 중에서도 세종은 이문교육과 인재양성에 매우 힘을 기울였으니, 승문원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성종 7년(1476) 10월 이문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첫째, 이문은 『大典』에 의하여 한 달에 세 번 제술하고 寫字도 奏本인 表文, 箋文과 正本 副本 중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 매월 세 차례 書寫하되 50자를 한하여 어기는 사람은 科罪하고 게으른 사람은 파직하게 하였다. 둘째, 漢訓은 冊帙의 多少에 따라 날짜를 한정하여 미처 다 읽지 못하면 科罪하고 게으른 사람은 罷黜하게 하였다. 셋째, 習讀한 사람을 중국의 수도에 가는 행차에 딸려 보내기도 하고 또는 요동에 보내어 漢訓과 이문을 학습하게도 하였다. 넷째, 겸관과 습독관은 본사의 일이 급한 사람은 한 달에 6일, 급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에 10일을 승문원에 와서 이문 등을 익히게 하였다. 어기면 벌을 주었다. 그리고 성종 9년(1478) 10월 이조와 예조 그리고 승문원에 전교하여 나이 젊고 총명한 文臣을 골라 이문을 專業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성종 9년(1478) 11월에도 이문교육에 관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보충하였다. 첫째, 이문은 『大典』에 의거하여 한 달에 세 차례 출제하여 常仕提調가 열흘마다 검사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계절마다 도제조가 한 차례 시험을 보여 성적과 제술한 회수를 각각의 이름 밑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둘째, 『지정조격』, 『대원통제』, 『이문등록』과 이문에 관한 서적을 매일 10장 이상 읽도록 정하여 상사제조가 날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계절마다 도제조가 한 차례 한 달 읽은 것 중에서 세 곳을 골라 읽혀서 읽은 장수를 각각 이름 밑에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다. 셋째, 이문 중에서 文義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북경에 갈 때마다 질정하여 익숙하게 통할 수 있도록 하며, 또 한문으로 번역하여 돌아와 자세하게 아뢰고 다음 번 이문을 考講할 때 그 내용을 講論하고 즉시 謄寫하여 습독하게 하였다.

넷째, 이문을 강독한 것과 제술한 分數를 歲抄 때 통틀어 살펴서 다섯 번 수석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고 堂下官은 승진시키며, 그 중에서 특이한 사람은 요직으로 우대하며 게으른 사람은 파직시켜 직을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 다섯째, 간택된 사람은 승문원의 습독관에게 口傳으로 익히게 하며 겸관도 위의 항목과 예에 의거하여 습독과 제술을 하게 해서 그 仕進한 날짜의 많고 적음과 공부한 과정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계산하여 殿最에 참고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때로 庭試에서 이문을 시험하고 수석한 사람에게는 벼슬을 높이거나 상을 주었다.

그리고 승문원에서는 寫字에도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세종 26년(1444) 1월 이문을 제술할 때 글씨도 아울러 쓰도록 하여 分數를 헤아려 褒貶에 참고하도록 법을 세웠다. 그래서 승문원의 녹관, 겸관, 학관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咨文, 表箋, 表兼咨文을 제조가 차례(番)를 나누어 예습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 咨文 100자 이상과 表箋 50자 이상을 쓰게 하여, 그 分數를 기록하여 포폄에 참고하게 하였다. 만약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착오를 일으키면 初犯은 하인을 가두고 再犯은 啓聞하여 죄를 논하게 하였다. 매우 엄한 법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 만큼 이문의 제술과 사자는 국가적으로 인재양성과 교육을 엄격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寫字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조 7년(1461) 12월에는 書寫官에 대한 考課를 정하였다. 즉 서사관은 벌은 있으나 상이 없기 때문에 奏本, 咨文, 表文, 方物狀 및 副本 중에 20통을 베끼어 틀리거나 그릇된 것이 없으면 吏文製述 일등의 예에 의하여 1考를 주어 권장하고 격려하게 하였다.

그리고 승문원의 관리에게는 특전이 주어졌다. 첫째, 승문원의 久任官 祿官 및 兼官 중에서 이문제술이나 習讀, 寫字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은 出使外補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승문원에 소임을 전부 맡은 사람이나 이문

제술과 습독 그리고 寫字에 특별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서 평민이 된 경우라도 중범과 私罪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품계에 權知를 시켜 승문원에 항상 출근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였다. 셋째, 이문에 전업하는 사람은 달마다 考課 하여 1등으로 入格하면 가자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물론 이 법은 세종 25년(1443) 11월에 너무 지나치다고 하여 1등으로 입격한 사람도 즉시 加資하지 말고 따로 1上考를 주되 褒貶한 등급을 통계하여 만 5課3上인 사람만 個月數에 관계없이 加資하게 하였다. 또 2년 동안 6考에 이르면 5考를 계산하여 加資하고 나머지 1考는 5考에 합하여 계산하게 하였다. 또 1등으로 入格한 수를 5명으로 정하였다.

넷째, 승문원의 녹관과 겸관은 吏文, 漢訓, 寫字를 익히는 관계로 外職을 허락하지 않아, 수령을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加資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종 2년(1471) 10월에 승문원 관리는 비록 守令을 지내지 않았어도 加資하게 하였다. 이 법을 성종 3년(1472) 2월에 고쳐 승문원 관원 중에서 表文과 咨文의 副本을 書寫하는 사람과 吏文에 1등으로 입격한 사람만 품계를 더하게 하였다. 이 법은 『경국대전』 卷之 一, 吏典, 京官職에도 실려 있다. 즉 승문원의 관원으로서 글씨나 이문에 특이한 재간이 있는 사람과 홍문관의 관원과 各道의 敎官 및 遞兒職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령을 지내지 아니한 사람은 四品이상의 품계에 승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25]

이외에도 質正官을 통하여 중국에 가서 이문과 『지정조격』 그리고 音韻 등에 모르는 곳이 있으면 물어서 자세하게 漢文으로 기록하여 돌아와 여러 사람들이 익히게 하였다. 또 직접 요동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문과 한어를 배워서 돌아오게도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현장교육으로 직접 외국인을 만나고 또 관리나 전문학자를 찾아가서 이문과 한어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고 정확하게 익히게 하였던 것이다. 결국 매우 철저한 학습과 평가를 人事의 陞黜

25) 『經國大典』, 卷之一, 吏典, 京官職
承文院官員 寫字吏文特異者 弘文館官員 諸道敎官 及遞兒職外 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階

과 褒貶에 반영하여 승문원 관리들의 吏文製述과 習讀 그리고 漢訓과 漢語에 대한 교육과 인재양성의 목표를 제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4. 孫士晟의 家系와 仕宦

孫士晟은 본관이 경주(월성)이며 조선 태조 4년(1396, 丙子)에 태어나서 성종 8년(1477, 丁酉)에 향년 81세로 棄世하였다. 弱冠에 司馬試(문과의 小科로 生進科라고도 함)에 합격하고, 조선 세종 5년(1423, 癸卯) 27세로 文科에 급제[26]하였다. 同進士 22위[27]였다.

그런데 『國朝文科榜目』을 보면 손사성은 일명 孫士明이라 했다. 문과급제 전에 이미 宗廟副令을 지냈고, 세종 5년 문과급제 때에는 승문원 박사로 재직 중이었다.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손사성의 仕宦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상	宗廟署 副令
세종 5년(1423, 癸卯)	승문원 박사

---

26) 『國朝文科榜目』(CD－ROM≪국조방목≫), 한국정신문화원.
孫士明(孫士晟을 일명 손사명이라 하였다. 필자 주)세종 5년(1423, 癸卯), 식년시, 同進士22위, 본관 경주, 거주지 미상, 前歷 宗廟副令, 관직 승문원 교리, 父 孫登, 祖父 孫玄儉, 妻父 權彦臣, 子 孫旭으로 되어있다.
李衡祥의 『甁窩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孫玄叟 別紙에는 다음과 같다.
단 榜目으로 추정한다. … 殿試는 3월 28일이며 放榜은 4월 15일이다. 또 말하기를 초3일에 사은 숙배하였다. … 孫士明은 居未라 하였다. 그 밑에 또 말하기를 孫士晟은 承文院 博士라 하였다.[但以榜目追之… 殿試三月二十八日 榜目四月十五日 又曰初三日謝恩肅拜 … 孫士明居未 其下又曰孫士晟爲承門博士]
元昊의 『觀瀾先生遺稿事蹟』, 卷之四, 摭遺, 殿試榜目에도 손사성의 현직이 博士라고 하였다. [同進士 二十三人 … 孫士明 博士 父登]

27) 조선초에는 甲科가 없었다. 乙科, 丙科, 同進士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고려의 遺制이다. 또 乙科, 丙科, 丁科로 나누기도 하였다. 세조 14년(1468, 戊子) 식년시부터 갑과 을과 병과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세종 5년(1423, 癸卯)	문과급제 同進士 22위
세종 11년(1429, 己酉)	承文院 博士(正七品)
세종 20년(1438, 戊午)	司憲府 監察(正六品)
세종 23년(1441, 辛酉)	승문원 校理(從五品)
세종 25년(1443, 癸亥)	司諫院 左獻納(正五品)
세종 26년(1444, 甲子)	사간원 右獻納(正五品)
세조 5년(1459, 己卯)	승문원 知事(從三品)
미상	行통정대부 병조참의(正三品)
贈職	純忠積德補祚功臣 嘉善大夫 兵曹參判 鷄城君

손사성의 승문원 지사에 대하여 점필재 김종직은, 손사성의 둘째 아들 孫昭(諡號:襄敏, 精忠出氣敵愾功臣)가 세조 5년(1459, 己卯)에 문과급제하여 승문원 漢文寫字로 근무하였는데, 마침 손사성이 승문원 知事(從三品)를 제수받았다[28]라고 하였다. 그래서 父子가 같은 관청에 근무하게 되어 매우 아름다운 광경으로 칭송되었다. 佔畢齋 金宗直은 손소와 소과와 대과를 모두 동방급제하였으며 같은 영남출신으로 30년간의 친구요 道友였다. 그래서 점필재는 손소의 가문에 대해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점필재는 친구 손소의 묘갈명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두어 가문의 미담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때 손사성의 나이 63세이었다. 무려 과거에 합격한 지 36년 만에 승문원에서 2번째 자리에 오른 것이다.

손사성의 사환은 첫째, 문과급제 이전에 현직 관리로서 임용되었으며, 특히 문과급제년도에 이미 승문원 박사로 이문을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이것은 손사성이 세종5년 이전부터 승문원에서 이문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

28) 孫昭, 『襄敏公集』, 附錄篇, 墓碣銘.
己卯春 嗣登賢科 選入承文院漢文寫字 爲儕輩冠 時 鷄城 除知事 公在南床 父子爲同官一院 以爲美談

하므로 손사성의 이문에 대한 전문성을 말해준다. 즉 손사성이 문과급제자도 아니면서 문관이 담당하는 正七品 승문원 박사에 임용되었다는 것은 그의 이문에 대한 전문적 능력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이문의 전문가가 드물었던 시기에 이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손사성은 승문원박사에 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손사성은 外職을 거의 거치지 않고 內職 그것도 승문원을 중심으로 40여 년간 벼슬하였는데, 이 또한 그의 이문에 대한 전문성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손사성은 벼슬의 승급이 매우 늦었으며, 여전히 정치권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것은 손사성의 관리생활이 주로 승문원을 중심으로 吏文을 주무로 다루며 승문원의 실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손사성의 이문에 대한 전문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은 2003년 경주(월성) 손씨 宗家(宗孫 孫成熏)에서 발견된 『至正條格』이 단적인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손사성이 승문원의 이문을 專掌하게 된 것은, 세종 23년(1441, 辛酉)부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해 2월 1일 세종께서 지중추원사 權踶, 예조판서 閔義生, 이조참판 安止 그리고 行上護軍 金聽 등에게 명하여 吏文을 專掌할 사람을 선발하게 했을 때, 손사성은 승문원 교리로서 金滉(正郎), 皇甫恭(都事), 趙由信(교리), 郭珣(부교리)과 더불어 천거되었다.[29]

조선 초에는 중국에서 온 귀화인들이 주로 漢語와 이문을 담당하였으니, 唐誠과 偰長壽가 대표적 인물이다. 당성은 중국 浙江省 明州 사람으로 원나라 말기에 병란을 피하여 우리나라에 왔다. 처음에는 원나라가 설치한 征東行省의 緣吏가 되었는데, 율령에 매우 밝았고 널리 통하였다. 관직을 여러 번 옮겨 判典農寺事에 이르렀다. 태조가 즉위하자 檢校判漢城府事로서 문서응봉사의 제조가 되었다. 본관을 경상도 密陽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恭安府尹으로 致仕할 때까지 한어와 이문을 담당하였다.

---

29) 『조선왕조실록』, 세종 29권, 23년 2월 1일 戊辰(1441, 辛酉, 명 正統 6년)
命知中樞院事權踶 禮曹判書閔義生 吏曹參判安止 行上護軍金聽 等 選專掌吏文者 以正郎金滉 都事皇甫恭 兼校理孫士晟 教理趙由信 兼副校理郭珣 薦之

또 설장수(字 : 天民)는 先祖가 回鶻 高昌(지금의 중국 新疆省 투르판) 출신인 중국인이다. 至正 기해년에 아버지 偰遜이 가족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피난하여 왔다. 아들이 넷이었다.(長壽, 延壽, 慶壽, 眉壽) 공민왕이 옛 知遇라 하여 田宅을 주고 富院君으로 봉하였다. 장수는 22세 同進士科에 합격하여 벼슬이 密直提學에 이르러 完城君에 봉해지고 推誠輔理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조선 건국 후, 태조가 불러 燕山府院君을 봉했다. 벼슬이 恭安府尹에 이르렀으며, 정종 1년(1399) 10월에 병으로 죽으니, 향년 59세이다. 태조 10년 경주를 본관으로 삼게 했으며, 시호는 文貞이다. 『直解小學』을 찬술하였으며, 아들은 偰耐 偰循 偰振이다. 설장수의 동생인 偰眉壽(子, 猷)도 태종代에 벼슬하여, 명나라 사신을 여러 차례 다녀오고 승문원 도제조를 지내는 등 외교에 큰 공헌을 하였다. 세종 때에는 이들의 조카이며 偰慶壽의 아들인 偰循이 대활약을 하여, 세종의 명으로 『三綱行實圖』찬술에 공헌하였다. 세종이 설순을 매우 신임하였는데, 세종 17년(1435) 10월 丹毒으로 죽고 말았다. 이 후 이문과 한어를 담당하는 중국인의 대는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6년 후인 세종 23년(1441, 辛酉), 권제 등에 명하여 이문을 전장할 관리를 천거하라고 하였다. 이에 황보공, 김황, 손사성, 조유신, 곽순 5인을 천거하여 이문을 전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5인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문을 전장하게 된 제 1세대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황보공은 손사성과 문과에 동방급제 하였다. 세종 15년(1443) 승문원 부교리, 세종 20년(1438) 사간원 우헌납을 지냈고, 이 때 都事로 있었다. 김황은 세종 20년 사간원 우헌납을 지냈으며, 세종 24년(1442)에는 아버지 상을 당하였는데, 사간원 李徽가 그의 벼슬을 거두라고 건의하자 세종은 이문이 소중한 까닭에 오래도록 그 업을 폐할 수 없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을 정도로 이문에 밝았다. 손사성은 이 때 승문원 교리였다. 그의 직책이 곧바로 이문을 담당하는 자리였다. 조유신도 교리였으며 곽순 또한 부교리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때 이미 이문의 전문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5인 중에서 조유신은 가정사로, 곽순은 개인사로 벼슬길이 순

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황보공은 세조 2년에 外方에 付處되고 말았다. 이런 까닭으로 성종 20년(189) 11월 14일 경연에서 持平 李承寧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 세종조에는 李邊, 金禔, 孫士晟, 宋處寬 같은 사람들이 혹은 이문을 다루기도 하고 혹은 한어를 다루기도 하여 사대에 관한 일을 전임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일을 전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30]

위의 네 사람 중에서 이변은 30세가 넘어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에 들어가 漢語를 전임하였으며, 송처관 또한 한어를 전문으로 하였다. 이들은 이문에도 조예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그들의 전공영역은 한어를 기초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찍 고관의 반열에 올라 이문의 실무에서 떠나 있었다. 이변의 한어에 관한 조예는 고금명현과 節婦의 사실을 찬집하여 漢語로 번역한 『訓世評話』라는 책을 신숙주와 함께 저술했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하다. 또 김황은 이문가로 문종 2년(1452) 당상관에 천거되었으나, 단종 1년(1453) 참의가 되고, 다음 해인 단종 2년(1454)에는 중추원부사 또 세조 3년(1457)에는 동지중추원사로 이문의 실무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데 오직 손사성만은 세조 5년(1459, 己卯) 승문원 지사를 제수받아 이문의 책임을 맡게 된다. 세조의 이런 인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중국 귀화인들도 모두 죽고 또 이문을 전장하던 사람들도 다른 벼슬로 옮겨가거나 혹은 벼슬길이 순탄치 못하여 현직에서 물러나 이문을 실제로 책임질 실무에 능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조는 63세의 老臣인 손사성을 승문원 지사에 임명함으로써 승문원의 실무를 책임지게 하여 외교의 탄탄함을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손사성이 세종 5년(1423) 승문원

30) 『조선왕조실록』, 성종 234권, 20년 11월 14일 戊辰(1489, 己酉, 명 弘治 2년)
承寧又啓曰… 在世宗朝 如李邊 金禔 孫士晟 宋處寬 或以吏文 或以漢語 專任事大之事 今卽無一人 可任其事

박사이후 36년만이며, 세종 23년(1441, 辛酉) 이문 전장으로 천거된 이후 무려 18년 뒤의 일이다. 따라서 손사성의 이문 담당은 아마도 40여 년이 넘는다고 추정할 수 있으니, 승문원 지사는 손사성에게 실제 관리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물론 그는 이후 行通政大夫 兵曹參議로 벼슬을 떠났다. 따라서 손사성의 사환이 갖는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문전장 제 1세대에 속하며, 승문원을 중심으로 이문을 연구하고 이문제술과 습독에 평생을 바친 이문가로서의 관직생활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원활하고 국제관계가 안정되면서 차츰 이문이 경시되기 시작하였다. 중종 32년(1537) 4월 25일 金安老가 朝講에서 아뢴 말을 살펴보면 이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중국사신이 와서 문신들이 모였으나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문과 한어를 천시하기까지 하여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譯官들조차 그 업에 정통한 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명나라와의 외교가 원활하고 국제관계가 안정되었다는 것, 또 이문이 전임자들에 의하여 상당히 규범화되었다는 데 기인할 것이다.

거기다가 당시의 성리학이 도학적 경향을 띠게 됨에 따라, 선비들이 성리학적 학리탐구에 편중되어 철리적 이론연구에 열중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문과 급제자의 선망이요, 젊고 총민한 사람들이 맡던 이문은 외면당하게 되었다. 이런 학문적 경향은 사대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초엽만 하더라고 유학자들은 능문능리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에 의한 관리로서의 실용성에 주력하였으나, 도학의 대두로 학리연구에 편중하여 관리로서의 길보다는 학자로서의 길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리학의 성격과 경향 그리고 목적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사대부들은 순수철학이라는 학문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능문능리의 실무보다 경세의 철학과 이념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실무능력의 전문성을 위한 학문보다는 국가경영의 통치이념과 정당성에 주목하고 그 학문적 근거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것은 철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실용 학문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문은 하나의 기예로 취급되어 경시되고 더구나 천시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이문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사대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이문에 관한 지식 또한 올바로 승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손사성이, 세종, 문종, 단종, 세조에 걸쳐, 무려 40여 년 이상을 이문에 전념한 공적도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손사성의 사환이 갖는 의의는 둘째, 당시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손사성은 본관이 慶州(月城)로, 家系는 신라 六村 중의 하나인 大樹村 村長 俱禮馬로부터 비롯된다. 신라 건국 후에는 6頭品에 속하였다. 제 2대 儒理尼師今이 육촌을 六部로 개편하고, 육부에 六姓을 하사함으로써 비로소 孫氏라는 성이 등장하였다. 그 뒤 신라 興德王(826~835) 때 石鐘의 이변으로 효자공에 임명된 孫順이 역사상 孫이란 성을 가진 최초의 인물로 기록에 남아있다. 고려 말 敬源을 중시조로 다시 世系가 형성된다. 즉 손사성의 증조부이니, 벼슬이 奉翊大夫 判密直司事이다. 조부는 玄儉이니 벼슬이 嘉靖大夫檢校中樞院副使이다. 그리고 父는 登이고 벼슬이 承議郎 사헌부 감찰이며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贈職되었다. 母는 寧海 朴氏로서 戶長 朴時遇의 딸이다.

실지로 경주(월성) 손씨는 손사성이 문과를 거쳐 중앙정계에 출사함으로써 조선조 사대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 손사성의 처는 안동 권씨이며 權明利의 딸이다. 권명리는 청송현의 文居驛, 和睦驛, 訥仁院, 明堂洞 등에 농장이 있었다. 그는 치산능력이 뛰어나 안덕현 일대에 강력한 在地的 기반을 마련하였다. 권명리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친손과 외손이 모두 청송을 중심으로 지역을 넓혀가며 사족으로 발전하였다. 사성의 이런 혈연과 경제적 여건은 그로 하여금 사대부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손사성의 사환이 갖는 의의는 셋째, 경주(월성) 손씨는 손사성에 의하여 비로소 실직적인 사대부로서의 사회계층적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이다.

손사성의 장남은 旭인데 단종 원년(1453, 癸酉) 문과에 급제(增廣試 丁科

5)하였으나, 세조 13년(1467) 咸吉道 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가 그해 5월 李施愛의 난에 함흥에서 순절하였다. 둘째 昭는 21세에 생원시(단종 1년, 1453, 癸酉)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고, 세조 5년(1459, 己卯) 문과급제(式年試 丙科5)와 문예시에 장원하였다. 특히 세조 13년 이시애의 난에 平虜將軍 朴仲善의 從事官으로 참전하여 '精忠出氣敵愾功臣' 2등에 책록되고 鷄川君으로 封爵되었으며 襄敏이란 諡號를 받았다. 또 손사성 역시 純忠積德輔祚功臣 嘉善大夫 兵曹參判 鷄城君에 封爵되었다. 조부 孫登도 통정대부 호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손사성 일가는 공신의 집안으로 조선 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손소의 첫째아들 伯暾은 副司勇이며, 둘째 아들 仲暾(1463~1529)은 21세에 生員試(성종 14년 癸卯, 1483년 式年試 2등 20), 27세에 문과급제(성종 20년 己酉, 1489년 식년시 병과 20)하여 김해부사, 상주목사, 경상도·함경도·충청도·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또 공조판서와 이조판서 도승지 의정부 좌·우참찬을 역임하고 月城君의 封爵과 景節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는 67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40여 년을 내외 요직을 역임하며 청백리로 이름이 났었다. 셋째 叔暾(호 : 忘齋)은 曺漢輔와 無極太極에 관한 논변을 전개하였다.(이언적, 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 넷째는 季暾이니 연산군 1년(1495, 乙卯) 진사시에 합격(增廣試 3등 66)하여 정암 조광조의 현량과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 때, 정암을 구하기 위해 상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벼슬길이 좌절되자 경주 양동의 聖主山 아래로 돌아와 학문에 힘썼다. 그는 기묘명현 別科被薦人 92인 중의 한 사람이며, 「太極西銘合一之圖」와 賢良科 對策 등을 남겼다. 다섯째, 閏暾은 修義副尉이다.

또 외손들도 뛰어났다. 손사성의 외손자 閔世貞 (1471, 辛卯生, 字는 正叔, 驪興人)은 중종14년(1519, 己卯)에 賢良科試에 丙科 23으로 합격하여 彦陽현감과 咸鏡都事을 지냈으며, 역시 己卯名賢에 속한다. 특히 손소의 외손자 文元公 晦齋 李彦迪(1491~1553)은 10세에 아버지를 잃고, 외삼촌 景節公 愚齋 孫仲暾에게 배워 독창적 도학의 체계를 세우고 文廟에 배향되었다. 그래

서 손사성의 실용학문에 이어 회재까지 4代를 살펴보면, 당시 한국 유학의 시대적 변화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다.

곧 손사성은 能文能吏의 실용적 儒學이고 손소와 손중돈은 修己治人의 經世的 道學이며, 손계돈은 實踐躬行의 실천적 道學이요 이언적은 學理探求의 이념적 도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히 경주(월성) 손씨 一家는 科擧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연구하여 학문적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공신의 집안이며 명문가로서 실질적인 명예와 영광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조 경주(월성) 손씨 일가의 이런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과 학문의 시작이 손사성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김종직이, 계성군 손사성은 시골에서 능히 분기하여 탁연히 우뚝 입신하였다[31]라고 하였다. 따라서 손사성의 사환이 갖는 의의는 넷째,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사대부계층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지방향리 계층에 머물던 선비가 科擧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지배계층으로 편입되는, 사회계층적 신분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 논문은 조선 세종조에서 세조초까지 활동한 이문가 손사성(1396~1477)을 소개하고, 이문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승문원을 중심으로 한 이문교육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이문은 관청에서 행정을 위해 시행하던 공문서의 일종이다. 漢吏文과 韓吏文이 있다. 중국의 것을 漢吏文이라 하며, 국내 공문서에 사용하던 것을 韓吏文이라 한다. 韓吏文은 漢吏文을 모방하여 활용하였으며, 吏讀로 된 문서보다 품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漢吏文은 명나라와의

31) 孫昭『襄敏公集』, 附錄篇, 墓碣銘
鷄城能奮起鄕曲 卓然樹立

외교문서에 사용되던 특수한 문체와 문자를 의미한다. 漢吏文의 형식에는 咨, 奏, 申, 呈, 照會, 題 등이 있다. 그리고 이문은 언어학적으로 순수 한문이 아닌 북경을 중심으로 한 현실음과 개념이 복합된 중국어로 특수한 문체에 사용된 文言文이다. 즉 漢兒言語로 몽고어의 어순에 몽고어의 조사와 어미를 삽입하였고, 元明淸의 중국왕조가 우리나라와의 외교문서에 사용한 문언문이다. 따라서 한이문은 한문과 다르며 시대성을 지닌 공문체의 書面語이다. 그리고 근대한어의 어휘와 문법적 형식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元代漢語의 흔적이 남아있다.

둘째, 이문은 명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관계 성립을 상징하는 국가문서이다. 곧 양국간 국제정세에 따른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문은 능문능리의 외교적 소양과 외교문서 작성을 위한 문장학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였다. 그 결과 사대부들에게 이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학문으로 인식되어 그들의 학문영역을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선관료사회의 공문서 작성과 시행이라는 행정행위를 규범적인 형식으로 정형화하였다. 즉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영의 객관적 통치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漢吏文에 대한 연구는 조선초기 譯學의 발달을 가져와 중국음운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켰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음성언어로서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게 하였다.

셋째, 고려시대 文書監進色이 문서응봉사로 그리고 승문원으로 개칭되어 이문을 담당하였다. 승문원은 정삼품아문으로 예조에 속하였으며, 그 직제는 태종 5년(1405) 이후 여러 차례 바뀌면서 품계의 명칭과 정원의 증감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초 漢吏科는 명경과에 준하였으나 이후 식년시 문과로 통합되고 세종5년(1423)에 폐과되었다. 科擧의 漢吏學은 역사와 경서, 원나라 법제, 중국어가 포함되었으며 승문원의 이문교육은 관리의 陞黜과 褒貶이란 평가위주로 이루어졌다. 즉 이문교육은 이문제술과 漢語 및 寫字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세종15년(1433), 이문제술을 한 달에 세 번 그리고 1년간 누적된

기록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또 세종 21년(1439)에는 매월 읽은 책의 범위를 기록하고 연말통계로 벼슬을 陞黜케 했으며, 이문생도의 교육은 관리마다 나누어 가르치게 하고 그 결과를 褒貶에 참고했다. 성종 9년(1478)에는 이문을 한 달에 세 차례 출제하여 常仕提調가 기록하고 계절마다 도제조가 시험을 보았으며, 『지정조격』, 『대원통제』, 『이문등록』등을 매일 10장 이상 읽게 하고 매월 읽은 양을 기록했다.

넷째 漢語는 세종 13년(1431), 『지정조격』, 『대원통제』, 『이문등록』을 우리말로 새겨서(鄕訓) 習讀케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승문원의 齋內에서는 한어로만 대화하게 하여 실습위주의 실용교육을 강조하였다. 또 세조 6년(1460)에 승문원 박사 이하는 5년에서 6년이 경과한 뒤에야 벼슬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이문과 漢學을 정밀하게 익히게 하였다 그리고 9품에서 8품 승진 시에는 『노걸대』, 『박통사』를, 8품에서 승진할 때는 『지정조격』과 『직해소학』을 익히고 四仲月 시험하여 略이상 전직케 했다. 성종7년(1476)에는 漢訓을 冊帙의 多少에 따라 날짜를 정하고 다 읽지 못하면 科罪하거나 罷黜하게 하였다. 또 조선조에서는 질정관을 통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발음과 漢訓을 공부하게 하거나, 혹은 직접 京師나 요동에 習讀한 사람을 파견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寫字에 대한 書寫교육도 중시하였다. 세종 26년(1444) 이문제술시 글씨도 아울러 쓰게 했다. 또 祿官, 兼官, 學官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외에는 咨, 表, 箋, 表兼咨文을 제조가 차례를 나누어 예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매달 두 번 咨文 100자 이상과 表箋 50자 이상을 쓰게 했다. 세조 7년(1461)에는 서사관의 考課를 정하여 주본, 자문, 표문, 方物狀 및 副本 중에서 20통을 베끼어 훌륭하면 이문제술 일등의 예로 一考를 주었다. 성종 7년(1476)에는 奏本인 表文, 箋文, 正本, 副本 중에서 매월 세 차례 50字를 限하여 書寫하게 하였다. 또한 조선조에서는 승문원의 관리에게 특전을 베풀었다. 그래서 승문원의 久任官, 祿官, 兼官 중에서 이문제술과 습독 및 서사에 뛰어난 사람은 出使外補에서 제외하고 重犯과 私罪이외에는 원래 품계의

權知로 직무에 임하게 했다. 이문전업자는 매달 考課에 따라 加資하였으며, 성종 3년(1472)에 승문원 관리 중 표문과 자문의 부본을 서사하는 사람 및 이문 1등 입격자는 守令을 지내지 않아도 加資하게 하였다.

여섯째, 손사성은 문과급제이전 宗廟副令을 지냈으며, 세종5년(1423) 문과급제 시 승문원 박사였다. 이는 그의 이문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며, 2003년 발견된 『지정조격』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吏文專掌은 세종 23년(1441)부터이다. 이후 세조5년(1459) 승문원 지사에 제수되어 이문전장과 실무를 책임지게 되었다. 이것은 승문원 박사 이후 36년 만이며 이문전장이후 18년 만이다. 따라서 손사성의 仕宦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吏文專掌 제 1세대에 속하며, 40여 년간 승문원을 중심으로 이문을 연구하고 이문제술과 습독에 평생을 바친 관리요 이문가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그의 사환은 명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원활해지고 성리학의 도학적 경향에 의해 사대부들이 능문능리의 실무능력과 전문지식보다는 학리탐구에 편중되던 정치사회적 변화와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일곱째, 경주 손씨는 손사성이 문과를 거쳐 중앙정계에 진출함으로써 조선사대부로서의 사회계층적 지위를 확보한다. 그 후 아들 旭 과 昭, 손자 중돈과 숙돈, 계돈, 윤돈 및 외손 민세정에 의하여 공신집안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확고히 하였다. 특히 외증손 회재 이언적은 독창적 도학의 체계를 세워 문묘에 배향됨으로써 한국유학사를 빛낸다. 이들 4대의 학문을 살펴보면 당시 한국유학의 시대적 변화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곧 손사성은 能文能吏의 실용적 儒學이고 손소와 손중돈은 修己治人의 經世的 道學이며, 손계돈은 實踐躬行의 실천적 道學이요 이언적은 學理探求의 이념적 道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주 손씨 일가의 이런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과 학문의 시작이 손사성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손사성의 仕宦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까지 사대부계층의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지방향리계층에 머물던 선비가 과거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지배계층으로 편입되는 사회계층적 신분변화의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孫 昭,『襄敏公集』

孫仲暾,『愚齋集』

孫季暾,『柳谷先生文集』

成三問,『成謹甫集』

李衡祥,『甁窩先生文集』

元 昊,『觀瀾先生遺稿事蹟』

『慶州孫氏世譜』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經國大典』

『新增 東國與地勝覽』

『朝鮮各道邑誌』, 태학사, 1983.

『CD-ROM≪國朝榜目≫』, 한국정신문화원.

『訓讀 吏文』, 末松保和篇纂, 朝鮮印刷株式會社, 昭和17년.

『譯語類解』, 아세아문화사, 1974.

2. 저서 및 논문

강신항,『한국의 譯學』, 서울대출판부, 2000.

_____,『한국의 운서』, 태학사, 2000.

姜周鎭,『趙靜庵의 生涯와 思想』, 박영사, 1982.

박태권,「吏文과 吏文集覽硏究」,『수련어문논집』제1집, 부산여자대학교, 1973.

梁伍鎭,「『吏學指南』의 성격과 언어적 특징에 대하여」,『중국언어연구』제16집, 한국중국언어학회, 2003.

梁伍鎭,「吏文과 吏文諸書集覽의 言語」,『중국언어연구』제14집, 한국중국언어

학회, 2002.

『良佐洞硏究』,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篇, 영남대출판부, 1990.

정 광,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2006.

_____, 「吏文과 漢吏文」, 『口訣硏究』16집, 구결학회, 2006.